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2026. . .
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7호의 상위법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안 제2조제13호 및 제31조에서 정의를 ‘지식서비스사업’ 으로 수정하여 사업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안 제35조에서 보조금 반환 조치의 주체(시장)를 구체화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7호의 인용 상위법 수정
 - 당 초: “연구소” 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변 경: “연구소” 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 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

○ 안 제2조제13호 문구 수정

- 당 초: “서비스사업” 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변 경: “지식서비스사업” 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1조 제목과 제1항, 제5항 문구 수정

- 당 초: “서비스사업” -> 변경: “지식서비스사업”

○ 안 제35조제2항의 문구 수정

- 당 초: “경우에는” -> 변경: “경우에 시장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를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
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
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3호 “서비스사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
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를 “지식서비스사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
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31조 제목을 “관광·서비스사업 지원”을 “관광·지식서비스사업 지원”으로,
같은조 제1항과 제5항 중 “서비스사업”을 “지식서비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시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외국인”이란 「<u>외국인투자촉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p> <p>2.·3. (생략)</p> <p>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u>구미시</u>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 <p>제2조(정의) ----- ----- -----.</p> <p>1.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 -----.</p> <p>2.·3. (현행과 같음)</p> <p>4. ----- ----- ----- <u>시</u>----- ----- -----.</p> |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

5.·6. (생략)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8. ~ 10. (생략)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향상 등에 대해 합

5.·6. (현행과 같음)

7. -----

----- 제14조의2-----

-----.

8. “연구인력”이란 제2조제7호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2. -----

----- 산업

5.·6. (현행과 같음)

7.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8. (개정안과 같음)

9. ~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임명위원의 임기

통상부 -----

-.

13. “서비스사업”

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회

의에 부치는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3. “지식서비스사업”

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
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와 서기를 두되, 간
사는 투자유치담당과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④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할 때
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
최 3일전까지 각 위
원에게 서면으로 통

한 차례만 연임-----

----- . -----

----- .

③ -----

----- 투자
유치 담당 과장-----
----- 투자유치 담당
팀장이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회의 일시-----
----- 회의 개최 3일
전-----
-----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개정안과
같음)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

1. ~ 5. (생략)

⑤ (생략)

제9조(기업유치단)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관련 기관, 단체, 기업, 학계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미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갖추어 둔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업유치단) ① ----- 투자 촉진 -----

경제 관련 -----
----- 관련 분야 -----

운영할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업유치단)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② -----

----- 그 밖의 -----
-----.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제13조의3-----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2조(입지지원) -----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입지지원) 개정안과 같음

임대할 수 있다.

1.·2. (생략)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용 인원 ---

-----.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외국인 투자로 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연구를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소 임차 및 이전의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25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개정안과 같음)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
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5조의3(국비지원 기
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이전기

----- 기업
으로 한정한다.

1. ~ 3. (현행과 같
음)

② 시장은 연구소와
연구인력의 지역 유
치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이면서 상
시고용인원이 5명 이
상인 국내기업에 대
하여 연구소를 관내
로 이전하거나 신증
설하는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제25조의3(국비지원 기
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 -----

1. ~ 3. (현행과 같
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의3(국비지원 기
업에 대한 지원특례)
(개정안과 같음)

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25조의4(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중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 신증설 -----

----- 산
업통상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① ---

- 신증설-----

----- 근로자-----

----- 본인 및 가족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개정안과 같음)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근로자에 한하며, 세대원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 임대 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의2(부담금 지원) 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② -----

----- 근로자로 한정하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① -----

----- 지원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부담금 지원) 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② (개정안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부담금 지원) (개정안과 같음)

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가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한정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인력 우대혜택)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소 및 소속 연구인력이 관내로 주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에 대하여 월 100만원씩 2년간 우대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인력 우대혜택) (개정안과 같음)

소에 대한 3년 이상
관내 존치·확장 관
련 투자협약을 체결
한 기업에 한정하여
소속 연구인력에게 1
인당 월 30만원 한도
에서 1년 단위로 3년
간 우대 혜택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연구소 및 연구
인력 처우개선) 시장
은 기업의 연구소 관
내 신증설 또는 제27
조제2항의 투자협약
을 체결한 기업 연구
소 및 소속 연구인력
에게 연구개발 및 대
출이자 지원, 산학연
구개발 지원, 지역시
설 이용료 감면 또는
시의 각종 경제·기
업 지원정책, 정부
지원 공모사업, 그
밖의 지원정책을 추

제28조(연구소 및 연구
인력 처우개선) (개
정안과 같음)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9조에 따른 지원
외 추가 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
한 지원) 시장은 투
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
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의 3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9
호에 따른 관광사업
으로서 토지 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
한 지원) -----

----- 신·재생에너
지 -----

-----.

제31조(관광·서비스사

업 지원) ① -----
----- 제2
조제10호 및 제13호
에 따른 관광 및 서비
스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
한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31조(관광·**지식**서비

스사업 지원) ① ---

제2조제10호 및 제13
호에 따른 관광 및 **지**
식서비스사업-----

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의 협의하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상시고용
인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광
및 서비스사업-----
-----.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 지원받은 자-----

-----상시고용
인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광
및 지식서비스사업-----
-----.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개정안과 같음)

| | | |
|-------------------------|---|------------------------------|
| <p><u>제38조</u> (생략)</p> | <p><u>큰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u>제39조</u> (현행 제38조와 같음)</p> | <p><u>제39조</u> (개정안과 같음)</p> |
|-------------------------|---|------------------------------|